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34 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최기상・박선원・오세희

김영환 · 김한규 · 김정호

정성호・김 윤・백승아

김동아 • 박희승 • 이수진

임미애 • 박은정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.

하지만,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,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 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·개정할 필요 가 있음.

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

도모하려는 것임(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회는 본문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제2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인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의2(장애학생의 보호) ①	제16조의2(장애학생의 보호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	②		
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			
우 심의과정에 「장애인 등에			
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4호			
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			
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			
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			
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			
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다만, 해당 장애학생 또는		
	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		
	심의위원회는 본문에 따른 전		
	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		
	<u>다.</u>		
③ •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		